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전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14일

군 산 시



- 1. 공고명칭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- 2. 공고기간 : 2026. 9. 14. ~ 2026. 9. 29.(15일간)
- 3. 관련법규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,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
- 4. 대상자 및 내용

성명	주 소	위반사항	처분 과태료 (사전납부 20% 감경금액)	반송사유
최○엽	군산시 설림안*길 **, *동 ***호	금연구역 내 흡연 (2026. 8. 26.)	100,000원 (80,000원)	폐문부재

5. 유의사항

- 가.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, 2026년 9월 29일까지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나. 또한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)에 따라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%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(과태료 감경)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3급 이상), 미성년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, 과태료 금액의 50%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
(단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다른 법령상 감경할 사유에 의한 거듭 감경은 불가)

6. 기타사항

위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(2026년 9월 29일까지)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를 통해 안내 받으시거나 사전통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(☎ 063-454-5834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